

#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의 주요 쟁점 분석

김 인 숙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I. 서론

## II. 투자협상 경과 및 주요 쟁점

## III. 주요 쟁점별 분석

1.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2.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3.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4. 수용 및 보상
5. 손실 및 보상
6. 송금
7. 긴급제한조치
8.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9.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
10. 유보의 검토

## IV. 결론

### I. 서론

우리정부는 2009년 8월 7일 인도와 체결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한국-인도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인도 CEPA’)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였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인구(11억 5,000만 명)와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를 보유한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명목 GDP는 2008년 기준으로 1조 2,090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구매력평가기준의 GDP는 3조 2,880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 국가와 타결하는 최초의 FTA인 「한·인도 CEPA」가 정식 서명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에 앞서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3월 현재 총 987건에 21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중 제조업 투자가 18억6000만 달러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그러한 의미에서 한·인도 CEPA의 투자규정은 우리의 기 인도 진출기업 및 향후 진출할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을 분석함에 있어 인도를 상대로 해외투자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감안하면 「한·미 FTA」를 체결하던 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투자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즉, 「한·미 FTA」에서는 미국 투자자의 국내유치와 그 이후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 제도를 활용한 소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의 마련에 그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한·인도 CEPA」에서는 투자규정이 우리 국민의 대인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법리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대 인도 투자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유치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 위험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은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대인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한·인도 CEPA」 투자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향후 CEPA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

1) 우리나라 대 인도 투자현황

(단위: 천불)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3	누계(1968~2009.3)
신 고	43,039	21,207	48,947	112,700	150,291	327,701	281,040	16,905	2,177,849
투 자	44,837	16,893	40,773	91,132	98,490	291,221	188,505	22,016	1,515,326

출처: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보도자료, 2009.8.6, 6면(www.mofat.go.kr).



게 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게 될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의 FTA 체결에서 제기될 논란을 예방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투자협상 경과 및 주요 쟁점

「한·인도 CEPA」는 2006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상개시 선언을 통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3월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고, 2008년 9월 22일~25일간 열린 제1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타결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 2009년 2월 9일 협정문 가서명, 8월 7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인도 CEPA」는 한·인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인도는 서명 외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우리가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발효가 가능하다.

「한·인도 CEPA」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로서 서문, 15개 장(Chapter), 188개 조문 및 부속서(상품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투자유보안 등)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간 투자협상에서 주요 관심 쟁점은 투자개방 분야와 개방을 위한 접근방식, 그리고 투자보호제도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 간접수용 도입문제, 투자자와 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제도(ISD)의 도입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는 협정문상 기술된 개방 불허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자보호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인도는 자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sup>2)</sup>의 자유화에 합의하였고, 우리 정부는 동 협정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sup>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한 음·식 료품,

2)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기술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 보도자료, 2009.8.6, 3쪽(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fat.go.kr](http://www.mofat.go.kr))참조.

석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 등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sup>4)</sup> 또한 1996년 2월에 체결된 한·인도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이미 인도에 진입한 투자만 보장하는 반면, 「한·인도 CEPA」는 이미 상대국에 진출하여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단계의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대인도 투자가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수용과 관련하여 직접수용 이외에도 간접수용을 포함시켜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환경, 안전, 보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투자규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현지국의 공공복리 목적의 투자규제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당시 국내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ISD 제도도 포함되어 투자보호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주요 쟁점별 분석

#### 1.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한·인도 CEPA」의 투자관련 규정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뿐만 아니라 발효일 당시의 투자에도 적용된다.<sup>5)</sup> 다만 금융서비스 관련 투자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한·미 FTA」,<sup>6)</sup>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4)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의 개방을 허용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인도 정부는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자국은행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금융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은행의 금융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인도 CEPA 기대효과」, 2009. 8. 10(FTA국내대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korusfta/20086506245> 참조).

5) 「한·인도 CEPA」 제10.2조.

6) 「한·미 FTA」 제12.13조.



## 2.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 (1) 투자

「한·인도 CEPA」는 ‘투자’의 정의를 기업,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sup>7)</sup>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i) 기업

ii) 기업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iii) 채권, 회사채, 그 밖의 기업의 채무증서

iv)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v) 상업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vi) 지적재산권

vii) 국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 면허·인가·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viii)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

그러나 당사국 영역 내의 국민이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기업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은 투자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한·미FTA」에서도 이러한 투자의 개념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다만 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 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며,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어 투자의 범위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7) 「한·인도 CEPA」 제10.1조.

지적재산권은 투자협정에서 특별히 투자로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로 간주되고,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도 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도 CEPA」와 구별된다.

특히 「한·인도 CEPA」에서 유의할 사항은 양 당사국은 투자유치국 영역 내 ‘기업’이 투자의 형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 영업장소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sup>8)</sup> 「한·미 FTA」에는 이러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2) 투자자의 정의

「한·인도 CEPA」에서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국의 기업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및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사를 말한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공기업이 투자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sup>10)</sup> 「한·인도 CEPA」에서는 투자자의 범위에 공기업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기업”에 공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도<sup>11)</sup>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인도 CEPA」는 ‘기업’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sup>12)</sup> 또한 「한·미 FTA」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이 아닌 한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님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음에 비해<sup>13)</sup> 「한·인도 CEPA」에서는 관련 규정이 포함되고 있지 않다.

8) 「한·인도 CEPA」 제10.1조 주석 1).

9) 「한·인도 CEPA」 제10.1조.

10) 「한·미 FTA」에서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한·미 FTA」 제11.28조).

11) 「한·싱가포르 FTA」 제10.1조.

12) 「한·인도 CEPA」 제10.1조.

13) 「한·미 FTA」 제11.28조.



### 3.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 (1) 내국민대우

국제투자규범상 외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서는 비차별대우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차별대우원칙은 크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 문화산업, 방위산업 등에서 외국인에 의한 소유와 경영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 원칙이란 각 계약국이 타방 계약국의 투자자 또는 타방 계약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관리, 운용, 매각 및 기타 청산에 있어 제3의 계약국 또는 비계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 원칙을 규정하게 되면 협정 안에서 부여한 대우가 다른 협정에도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가령 A국이 B국과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A국이 C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B국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투자자에게 부여하였다면, B국은 A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양보도 없이 C국에 부여된 유리한 대우를 최혜국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자국에도 부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혜국대우 원칙은 그 특성이 무차별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협정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sup>14)</sup>

국제투자규범마다 그 운영 방식은 다양하여 양자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한쪽만 규정하기도 한다. 「한·인도 CEPA」는 비차별대우의 주요한 원칙 중 하나인 최혜국대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한·싱가포르 FTA」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한·미 FTA」,<sup>15)</sup> 「한·칠레 FTA」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14) 「한·칠레 FTA」 투자협상에서 칠레측은 투자를 규율한 제10장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을 배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칠레측은 타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정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제3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던 것이었다.

15) 「한·미 FTA」는 비차별대우로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용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투자의 설립전 단계 및 설립 후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한·미 FTA」 제11.3조, 11.4조).

「한·인도 CEPA」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투자 및 투자자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sup>16)</sup> 내국민대우는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투자의 설립 전 단계(pre-establishment stage)에서부터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는 방식과 설립 후 단계(post-establishment stage)에만 내국민대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투자 설립 전 단계에 대한 내국민대우란 잠재적인 투자 가능성까지도 권리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투자 활동과 관련된 전체 과정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도 CEPA」는 투자 설립 전 단계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투자보호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들 가운데 「한·일 BIT」를 제외한 BIT들이 투자의 설립 후 단계에서의 비차별대우 및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투자보장협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sup>17)</sup> 한국이 체결한 FTA, 즉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에서는 「한·미 FTA」<sup>18)</sup>에서와 동일하게 투자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비차별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한·칠레 FTA」는 내국민대우는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도 부여하는 대신, 최혜국대우는 이미 설립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보호의 범위를 투자설립 전 단계로부터 인정할 경우 그만큼 내국민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판단 요소인 “동종의 상황” 및 “동일한 투자 및 투자자”의 비교대상을 확정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2) 최소기준대우

최소기준대우란 투자유치국이 체약국 투자자에게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만큼은 최소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sup>19)</sup> 이 원칙의 목적은 숙지주의와 내국민대

16) 「한·인도 CEPA」 제10.3조.

17) 투자협정은 투자의 설립 후 단계에서 상대방 국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비차별대우와 투자 자산의 비상업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과투자의 설립 전 단계(설립 및 인수)에서의 비차별대우 등과 같이 투자 자유화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를 투자보장협정이라고 하며 현재 존재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거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반면 미국, 캐나다의 투자협정 모델, 한·일투자협정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

18) FTA에 부속된 별도 협정으로서 한·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의 투자협정(노르웨이는 참여하지 않음).

19)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을 최저수준으로 하여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국제협약 Plus 방식’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기준으로 하여 보호수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우 원칙만이 적용될 경우 국내정국불안, 법률개폐 등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투자자의 지위가 위임됨으로써 투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통하여 각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최저수준까지는 계약국의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보호수준을 통일시키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즉, 투자의 보호수준에 관한 국가별 차이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저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호수준의 통일은 계약국들 간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sup>20)</sup>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소기준대우 규정에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를 함께 포함시키는 관행은 미국이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한·미 FTA」에도 반영되었다.

이 규정의 특징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의 비차별대우원칙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됨에 반해 공정 및 평등대우 원칙을 포함하는 최소기준대우원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는 최소기준대우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보호수준이 달라질 수 없는 일반적 기준으로써 투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투자보호에 있어 중요한 규정이다. 외국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국내법 제나 입법 및 법집행이 취약한 저소득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며, 바로 이 점에서 최소기준대우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sup>21)</sup>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도 최소기준대우를 두어 외국인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이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소기준대우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

20) 김인숙, 『한·미 FTA 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73~74쪽.

21) 앞의 책, 74쪽.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상기 의무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규정은 「한·미 FTA」<sup>23)</sup>와 「한·싱가포르 FTA」<sup>24)</sup>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한 대우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서 부여되어야 하지만 공정·형평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한 대우의 명확한 정의가 국제관습법상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sup>25)</sup> 더군다나 개발도상국들은 최소기준대우가 국제관습법인가에 대해서조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이러한 논란에 대비하여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소기준대우”는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27)</sup> 또한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sup>28)</sup>

#### 4. 수용 및 보상

현대 투자협정들에서는 수용 및 국유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경향이다. 즉 직접수용 및 국유화와 함께 간접수용 또는 “국유화나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sup>29)</sup>를 수용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80개의 BIT 가운데 발효된 76개의 모든 협정은 직접적 형태의 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형태의 수용 역시 투자협정상 수용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용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처럼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박

22) 「한·인도 CEPA」 제10.4조.

23) 「한·미 FTA」 제11.5조.

24) 「한·싱가포르 FTA」 제10.5조.

25) Dolzer, Rudolf and Stevens, Margaret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CSID, 1995, pp. 10-13.

26) UNCTA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UN, 1999, p. 13.

27) 「한·미 FTA」 제11.5조.

28) 「한·미 FTA」 제11.5조 foot note.

29) Energy Charter Treaty 제13조 제1항.



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투자자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도 최근에 체결하고 있는 FTA에서 유사한 규정들을 두어 간접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인도 CEPA도 직접수용과 함께 간접수용을 규정하여, 직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를, 간접수용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0)</sup>

「한·인도 CEPA」는 수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비차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즉 i) 공공 목적을 위한 것, ii) 비차별적 방식일 것, iii)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iv) 적법절차와 제10.4조(최소기준대우)를 따를 것.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충분히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계획이 사전에 알려짐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이 규정은 「한·미 FTA」와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sup>32)</sup>

한편 「한·인도 CEPA」는 간접수용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용관련 부속서를 별도로 두어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 즉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속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화하고 있

30) 「한·인도 CEPA」 부속서 10-가(수용).

31) 「한·인도 CEPA」 제10.12조.

32) 「한·미 FTA」 제11.6조.

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예시로 명기되지 않은 다른 정책들이 간접수용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한·미 FTA」와 유사하다.

## 5. 손실 및 보상

「한·인도 CEPA」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규정 외에 폭동·시민소요 등으로 인해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혁명·폭동·시민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수준이 다른 경우 양 대우 가운데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투자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어느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아야 하고, 보상에 관하여는 10.12조의 수용규정에 따라야 한다.<sup>33)</sup>

그러나 이 규정은 수용 이외의 손실 및 보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기준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 안에서 유사한 상황을 규율하고 있는 「한·미 FTA」와 다소 차이가 있다.<sup>34)</sup> 또한 「한·미 FTA」는 각 당사국이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폭동·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

33) 「한·인도 CEPA」 제10.13조.

34) 「한·미 FTA」 제11.5조.



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의 투자자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인도 CEPA」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수준이 다른 경우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보다 투자보호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송금

송금규정은 자금의 신속하고 자유로운 송금에 대한 투자자의 이익과 외환 및 수지 등에 대한 규제당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송금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자본의 해외유출을 통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위협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 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자유로운 송금의 보장은 해외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35)</sup>

「한·인도 CEPA」는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하여 자유롭고 지체 없이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분, 둘째, 이윤·배당·자본이득·사용료지불·경영지도비 및 그 밖의 수수료·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과생되는 그 밖의 금액, 셋째,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넷째,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다섯째, 수용 및 보상규정과 손실 및 보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여섯째, 분쟁 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그리고 일곱째, 당사국 영역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의 소득이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i) 파산·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ii)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iii) 형사범죄, iv) 통화나 그 밖의 지급수단의 송금에 대한 보고, v)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vi) 연금, 퇴직연금프로그램 및 고용보험 프

35) Somarajah, M,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252.

로그래를 포함한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법정적립기금 등.<sup>36)</sup> 자유로운 송금의 보장과 송금의 구체적 금지사유는 「한·미 FTA」,<sup>37)</sup> 「한·싱가포르 FTA」와 유사하다.<sup>38)</sup> 다만 「한·인도 CEPA」가 연금, 퇴직연금프로그램 및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법정적립기금 등도 송금 금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보호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7. 긴급제한조치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송금(transfer of capital)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협정상 소위 ‘긴급제한조치’란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Temporary derogation clause)으로서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긴급한 상황에서 자유송금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의미한다. 송금<sup>39)</sup>은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자유로운 송금의 보장이 투자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건인 반면에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익이 막대한 규모로 해외송금을 통해 빠져 나갈 경우 국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경제개발정책에 위협이 되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본래의 목적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투자협정에서는 송금에 관한 조항을 절대적 규정으로 포함한다.<sup>40)</sup> 동시에 단기자본의 이동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국제투자규범에서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따른 자유송금의 예외를 인정하는 긴급제한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외환 위기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송금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수 있

36) 「한·인도 CEPA」 제10.10조.

37) 「한·미 FTA」 제11.7조.

38) 「한·싱가포르 FTA」 제10.11조.

39) 일반적으로 국제투자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송금의 내용에는 외국인투자자본, 투자를 통해 창출된 수익과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배당,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출 즉 비용의 지급,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기타의 채무의 변제 등이 포함된다. UNCTA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 the Mid-1990s* (New York and Geneva: UN, 1998), p. 75.

40) Ibid., pp. 252-253.



도록 허용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도입하고자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동 조항의 도입이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들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긴급제한조치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본통제(capital control)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결국 우리 정부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외국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긴급제한조치(예,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관철시켜 「한·미 FTA」에 동 규정을 포함시켰고, 이 규정은 미국이 체결한 FTA 사상 최초로 인정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sup>42)</sup>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따른 자유송금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Measures) 규정을 두고 있다.<sup>43)</sup> 이 규정에 의하면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국경 간 자본거래 및 자유로운 송금의 보장의무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i)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ii)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동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의 긴급제한조치 규정과 유사하다.<sup>44)</sup> 다만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양 당사국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택되고 유지되는 조치는 6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재도입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으나, 「한·인도 CEPA」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최소요구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고 있어 최소요구기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41) 긴급제한조치 규정의 존치 문제는 1998년 한·미 투자협상 과정에서도 스크린쿼터 문제와 함께 양국간의 대표적인 쟁점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자금의 경우 긴급경제 상황에서도 자유송금의 원칙을 보호할 수 있지만, 금융적 성격의 단기자본 이동까지 이러한 예외 없는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42) 법무부, 「FTA협상결과」 보도자료, 2007.4, 5쪽(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참조).

43)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 한글 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긴급한 제한조치를 '긴급수입제한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취해지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장(Chapter)은 투자조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긴급제한조치'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한·싱가포르 FTA」 제10.12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sup>45)</sup>

또한 「한·인도 CEPA」에 따르면 앞의 긴급제한조치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시행된다. i)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ii) 제1항에서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iv) 타방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v) 타방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회피하여야 한다. vi)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vii) 타방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우호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칠레 FTA」에서는 긴급제한조치의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으며,<sup>46)</sup> 「한·미 FTA」에서도 긴급제한조치의 발동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하고,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sup>47)</sup>

또한 「한·인도 CEPA」가 긴급제한조치에 대해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른 적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긴급제한조치에 대해 내국민대우뿐만 아니라 최혜국대우도 부여 하도록 하고 있다.<sup>48)</sup>

## 8.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한·인도 CEPA」는 보건·안전·환경 관련 조치의 합리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협정에 따르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보건·안전 또는 환경상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와 같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이 협정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국내 보건·안전 또는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인수·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45)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제한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6) 「한·인도 CEPA」 제10.11조.

47) 「한·미 FTA」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송금.

48) 「한·미 FTA」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송금.





면제 또는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 또는 이탈할 것을 제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안했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sup>49)</sup>

이 규정은 환경을 이유로 한 투자규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규정이다. 즉 「한·미 FTA」는 환경과 관련하여서만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0)</sup> 물론 「한·미 FTA」체제에서도 환경 이외의 안전 및 보건을 이유로 한 투자규제조치가 동 협정에 합치되는 한 합리화될 수는 있다.<sup>51)</sup> 다만 「한·인도 CEPA」는 환경 이외에도 보건·안전 관련 조치의 합리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정부의 투자규제조치가 좀 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9.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ISD)란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자신의 투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외국 투자자가 동 정부를 해당국 국내법원뿐 아니라 국제 중재판정부에도 선택적으로 제소 가능하도록 국제조약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sup>52)</sup>

「한·인도 CEPA」도 ISD 제도를 도입, 외국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

49) 「한·인도 CEPA」 제10.16조.

50) 「한·미 FTA」 제11.10조.

51)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 수용부속서와 「한·인도 CEPA」 수용부속서는 공통적으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 개의 투자협정에는 대부분 ISD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도 「한·미 FTA」 이전에 체결한 80개 국가와 체결한 BIT와 칠레, EFTA,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도 모두 투자분쟁 해결 절차로 ISD를 채택한 바 있다.

해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sup>53)</sup> 이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투자 중인 외국 투자자는 분쟁발생시 국내법원 또는 국제중재기관에 제소가 가능하지만 사건을 국내법원에 제소한 이후에는 서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중재로의 이행이 불가하다. 국제중재기관으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sup>54)</sup> 또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관정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재심리절차 및 중재관정부에 제출된 의견서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당사국법에 의한 비밀정보는 제외),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중재관정은 ‘중재관정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등을 통해 각 체약국에서 집행되고, ICSID 중재관정은 당사국 법원의 최종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10. 유보의 검토

「한·인도 CEPA」는 투자규정과 관련하여 유보의 검토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인도는 투자분야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투자개방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투자개방이 약속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유보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유보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투자개방이 허용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는 이 협정이 발효후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 협정에 의해 타방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이 협정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타방당사국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5)</sup> 동 규정은 여타의 한국이 체결한 FTA 투자규정에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협정 체결 후의 타 체약국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개방을 최혜국대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제15조 2항에 규정된 공동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자국의 유보목록을 감소시키고, 내국민대우, 이행용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기간·제한·조건 및 자격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각각의 유보목록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53) 「한·인도 CEPA」 제10.21조.

5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는 ICSID 협약에 의해 1966년 창설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기구로서 동 협약의 당사국은 우리나라 등 143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55) 「한·인도 CEPA」 제10.9조.



#### IV. 결 론

「한·인도 CEPA」의 투자규정은 우리의 기 인도 진출기업 및 향후 진출할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 인도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 유치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된다. 즉,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이나 국유화, 현지국 내에서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통화의 불태환 결정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 요소는 우리 국민인 투자자가 해외투자의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들인 것이다.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은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대 인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된다.

「한·인도 CEPA」 투자규정에서 대 인도 투자의 보호를 위해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환경정책 및 보건·안전을 이유로 한 투자규제조치들이 간접수용 규정이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체약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입법 및 행정조치가 외국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이를 간접수용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 등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규제조치가 투자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ISD에 회부된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 인도 투자가 보호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은 당사국이 보건·안전 또는 환경상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와 같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이 협정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sup>56)</sup> 따라서 「한·인도 CEPA」에 따르면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환경규제는 가능하다. 다만 NAFTA 관련 투자분쟁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환경관련 법령에서 외국투자자를 직접 차별대우하거나, 최소기준대우에 반하는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법제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대 인도 투자

56) 「한·인도 CEPA」 제10.16조.



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한·인도 CEPA」 투자규정을 근거로 인도정부의 환경, 보건, 건강 관련 투자규제조치가 간접수용규정, 내국민대우 및 최소기준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에 미치는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여 분쟁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